성주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자 : 성주군수
2. 개정이유
 ○「문화재보호법」 제103조제5항에서 문화재보호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에 대해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의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한 과태료를 별도로 규정하고자 함.
3. 주요내용
 ○「문화재 보호법」에 따른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흡연한 자에 대한 과태료(안 제17조제1항) :「문화재보호법」 제10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및 제2항 준용
 - 위반행위의 동기, 내용,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(10만원)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
4. 참고사항
 가. 관계법령 : 「문화재보호법」
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 다. 기 타
 1) 입법예고 : 의견없음(2015. 10. 22. ~ 2015. 11. 11.)
 2) 규제심사 : 해당없음
 3) 성별영향평가분석 : 원안동의
5. 검토의견
 ❍ 본 조례안은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「문화재보호법」제10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대해 조례에 반영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
 ❍ 주요 개정 내용은
 - 안 제17조제1항 문화재보호구역에서 흡연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「문화재보호법」제 10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토록 규정한 조례입니다.
 ❍ 법리 검토 결과 상위법인 「문화재보호법」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 입법 입안심사 기준에 합당하므로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